

※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법령,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7. 6. 12 ~ 6. 19 ≡

# 생 일 면 정기종합감사 결과



완 도 군

(기 획 예 산 실)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생일면 자체예산과 재배정 예산집행, 담당별 업무처리 실태, 각종 민원 및 인·허가 처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점검
- 감사를 통하여 신지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생일면사무소
- 감사범위 :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말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3 감사중점사항

- 세출예산 및 민간보조금(경상·자본보조) 집행과정의 적정성
-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전년도 감사 조치결과
- 지방세 과세 적정성, 각종 수입금의 세입조치 적정성 등 중점 점검

# II. 세부지적사항(요약)

### ◇ 비밀문서 관리 소홀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0명의 비밀보관책임자가 인사 발령으로 교체되었는데도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등 비밀문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유연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 실시등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8시이전 조기출근하는 유연근무자의 경우 복무관리시스템(지문 인식기)에 각각 출근 또는 퇴근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연근무자 중 출근시간 등록을 수시 누락하는 등 유연근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유연근무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 청사경비 및 당직근무 소홀

- 2015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재택 당직근무자가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총 0회 작동하지 않고 퇴청하여 청사경비 공백 초래하였으며, 또한 0분내지 0분 까지 당직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퇴근 하는 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

#### ◇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

-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 0개소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일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출의 대부분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하였으며, 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한 노인회비 및 불우이웃 성금 및 청년회 준공식 찬조금 등 으로 지출하는 등 경로당 운영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 ◇ 인감증명서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0건에 대하여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대리인 경우 무인을 날인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날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2015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0건의 민원을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처리 하는 등 민원사무 업무를 소홀히 함

#### ◇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관할 이장에게 송부하여 전입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0건에 대해서는 전입·주민등록 신고 확인서를 미편철하였으며, 또한 전입신고확인서에 전입신고 사항에 대한 사후확인이 불가능하도록 관리하였으며 직권말소 등 사후행정조치를 소홀히 함.

#### ◇ 등록면허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건축물 신고를 받은 생일면 생일로 000등 2건 00천원의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함.

#### ◇ 매입물품 장부 미등재 및 물품관리 소홀

- 『완도군 물품관리조례』 제3조및제24조에 따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규칙에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소모품대장)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수불대장 또는 소모품대장을 구비하지 않는 등 물품구매 및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 세출예산 지출과목 집행 부적정

-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면사무소 위성수신료 및 면사무소 정수기 유지관리 비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 등 0건 000천원과 재료비에서

집행해야 될 폐기물종합처리장 톱밥구입비 0건 000천원 및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할 백운산 전망대 정자보수공사 0건 000천원,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할 우편 사용료 000천원 등을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함.

#### ◇ 지역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2015년 상반기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0건을 정당한 채주(회의참석 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역발전위원회 총무에게 일괄지급하여 위원회 공동 경비로 사용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함.

####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업무 소홀

- 2016년도에 계약한 “컨테이너 운반차량 임차” 외 0건에 대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공제)가입여부 및 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설기계 임대 계약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함.

#### ◇ 국내여비(관외-관용차사용)지급 부적정

- 2015년~2016년 직원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한 0명에 대해 일비 00천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함.

#### ◇ 신용카드 사용절차 미 이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는 품의→원인행위→지출 단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6 가고싶은섬 가꾸기 주민대학 참석자 급식비 외 0건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전에 집행품의를 하여나 하나, 먼저 신용카드 결제 후 집행품의를 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함.

#### ◇ 기간제근로자보험 등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인 자(1주간 15시간 미만)인자는 일용 근로자로 적용제외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기간과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의무가입대상이다.

- 생일면 도로변 풀베기사업외 0건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보험(산재·고용)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2015년 면사무소 예취기 수리비 지급 등 0건을 계약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출결의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함.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위탁처리) 추진 소홀**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위탁사업자가 해양쓰레기를 상차할 때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확인 하여야 함에도 총 0회의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출장복명서가 없으며 사업자의 일일작업일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업비를 집행하는 업무 특성상 투명성에 우려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위탁처리)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내해수면 어패류양식 실태조사 업무 소홀**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양식어업에 대한 종묘입식 및 재고량을 조사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읍·면에 비치된 해면양식 어업관리 대장에 입식·출하시 어업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기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6년 0여가의 해면양식어장 관리대장에 실태조사 결과를 미기입하여 정확한 어패류 양식현황 관리가 안되고 있는 등, 해면양식 어업관리대장 기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 ◇ 해양수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소홀

- 관리대상 사업중 2001~2016년에 설치된 해양수산시설물(다목적인양기 0개소, 복합다기능부잔교 0개소)에 대해서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점검 대장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미점검 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관리 소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 기금으로 조성 마을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0개 마을이 개인통장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집행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및 점검하지 않아 마을공동 기금관리를 소홀히 함.

####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소홀

-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10명 내외의 자체심의회를 구성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상태 등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 하여야 함에도 농기계 관리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고 점검 또한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인건비)추진 소홀

- 인부사역시 『완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만60세 이하인자를 근로계약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 ~ 2016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기간중 총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0명에 대해 만60세 이상 연령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함.

####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리 소홀

-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은 우천 등 야외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 안전교육, 직무교육, 기타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5. 4 ~ '17. 5.

기간중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강수량 10mm이상 기준) 0일에 대하여 안전교육, 직무 교육 미실시하여 산불진화대원을 무단 방치하는 등 산불진화대원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 건설공사 도급업체 선정 부적정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법 시행령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적정면허를 등록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함에도 ‘생일 00리 000사업’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한 사업이 1천5백만원 이상이므로 전문건설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해당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함.

#### ◇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공사감독·검사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끝날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일 00리 0000공사 등 0건에 대하여 계약서 및 설계서에 반영된 공정들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하여 부족 시공된 시설공사 대한 0건 000천원을 감액 또는 재시공 요구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함.

#### ◇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환경보전비 실적 정산 및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일면 00리 000공사 등 0건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산없이 산재 및 고용보험료 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사후 정산업무를 소홀히 함.

#### ◇ 재배정예산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배정된 주민불편사항해소 사업 등 00개 사업비 잔액 000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생일 000리 물양장 시설공사 외 1개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함.

#### ◇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1년미만일때는 도로 점용 허가증 교부시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3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해야함에도 2017년도 0건 도로점·사용료 000천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미납액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함.

#### ◇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 존치기간이 2016. 11. 28일까지인 000리 38 외 0필지 000의 가설 건축물축조 신고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존치기간의 연장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가설건축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함에도 2015~2016년 하자검사 대상인 00건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계획 수립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준공된 시설물의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

#### ◇ 건축신고 업무 소홀

- 2016. 9. 9. 준공한 00리 새마을회 창고 신축 건축신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가 되지 않았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하는 등 건축신고 업무를 소홀히 함.

#### ◇ 민방위 업무 및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 소홀

- 완도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읍면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읍·면장을 본부장으로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완도군민방위 화생방·시설장비 운영계획에 따라 장비 보관 창고별 장비현황판을 부착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장비수량 및 관리 상태등을 점검 일지에 기록유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를 일반재난물자와 별도 구분 보관하지 않는 등 민방위 장비관리를 소홀히 함.